

#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 263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19. 11. 29(금) 15:00 ~ 18:00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종관 위 원 장  
강홍구 위 원  
김기봉 위 원  
나종영 위 원  
이희경 위 원  
조기숙 위 원  
최창주 위 원

## 1. 성 원 보 고

### ○박종관 위원장

- 2019년도 11월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2개의 기본운영 개정(안)과 문예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등 6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7개의 보고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먼저 성원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효관 사무처장

- 예, 오늘은 위원 10인 중에서 7인이 참석해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 2. 개 회 선 언

○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3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3. 전차(前次) 회의결과

○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중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효관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60차 회의에서는 3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서 3개 모두 원안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61차, 262차 서면회의에서는 각각 1건씩 의결안건이 상정되어서 원안 의결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4. 의 결 사 항

○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전차(前次) 회의결과는 두 차례의 서면회의를 포함해서 총 5건의 의결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263차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개의 의결안건 중에서 첫 번째 의결안건은 2020년 국제예술공동기금 「한-싱가포르

사전 리서치」 사업 프로그램 주관처 공모 계획(안)입니다.

이것은 국제교류부 임재연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2020년 국제예술공동기금 「한-싱가포르 사전 리서치」 사업 프로그램 주관처 공모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년에 국제예술공동기금이라는 사업 프레임 내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사업을 할 텐데요. 2020년도 3월경에 저희가 「한-싱가포르 사전 리서치」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주관처 공모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대상은 대규모 국제행사 운영 실적이 3건 이상 또는 국제심포지엄 운영 실적 2건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가 되겠고요. 해외 전문예술가가 참여한 국제 예술행사 기획 운영 실적이 있거나, 해외예술가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게 됩니다.

주관처의 주된 수행 업무는 사전 리서치, 내년도 3월에 진행 예정인데요. 3월에 진행될 사전 리서치 프로그램 대표단 구성을 위한 행정 업무를 맡게 됩니다.

사업 추진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준비 주요 실무 추진, 이를 테면 국내외 일정을 수립한다거나 예약, 통역사 섭외 등 업무를 맡게 될 것이고요. 사업 참여 대상 수행 및 관련 사업 추진 홍보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위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적 업무를 협조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는 8,100만 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고요. 지원내용은 사전 리서치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국외여비, 사례비, 홍보비 등 사전 리서치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경비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이 의결되면 오늘부터 공모를 추진해서 12월 13일까지 보름정도의 기간 안 게시를 할 예정이고요. 지원심의회의는 12월 18일 정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12월 말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안건번호 제 777호 2020년 국제예술공동기금 「한-싱가포르 사전 리서치」 프로그램 운영 주관처 공모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경 위원

- 12페이지 세부과업별 산정 기준인데요. 이게 싱가포르와의 사업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능할지를 사전에 연구하러 가는 자리인데요. 국외여비에 20인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큰 나라도 아니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위한 몇 사람이 분야별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20

명씩이나 움직여야 할 리서치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일단 저희가 6개 장르인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그리고 공연예술 안에서도 음악, 연극, 전통예술, 무용, 문학도 포함하고요. 이번에 싱가포르와 MOU를 체결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 아트&테크놀로지 분야입니다. 6개 분야 플러스 아트&테크놀로지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최대 2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명은 각 예술분야에 있는 예술가 플러스 기획자 그리고 이것을 총지휘를 하시는 분 1명이 포함되어 총 20명입니다.

#### ○나종영 위원

- 고생을 하셔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남북및국제교류 소위의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은 유럽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국제교류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면 싱가포르로 하는 배경에 대해서, 그동안은 독일이나 유럽에서 했는데 왜 싱가포르에서 하게 되었는지?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죠. 갑자기 싱가포르가 들어오니까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담당과장은 알지만 우리 위원들은 왜 싱가포르로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왜 유럽에서 했던 것을 동남아 쪽으로 돌렸는지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것인데 느닷없이 싱가포르가 올라왔는데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11월 25일과 26일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국제예술공동기금이 2016년부터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국가와 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유럽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권역과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인지되었고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신남방정책' 이라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중심으로 해 보자." 대신 아세안 나라 중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도가 가장 높은 싱가포르를 택해서 싱가포르와 지난 6월부터 저희가 직접 출장도 갔고요. NAC라고 국립싱가포르 예술위원회라는 곳을 방문해서 몇 차례의 회의 끝에 싱가포르와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었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저도 사실 보고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 23일 토요일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청와대에서 있었고요. 그날 제가 청와대로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내외를 함께 보였습니다. 그리고 25일 월요일 싱가포르아트카운실 위원장이 직접 우리나라로 와서 MOU를 체결했지요. 나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 우리 국제교류는 주로 유럽이 상대 국가였다면 아시아의 중점을 둔다는 부분도 있고요. 아트&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4차 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이 문제를 고민했던 싱가포르와의 교류 의미도 있을 겁니다. 핵심은 회의 자료에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

더라도 이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류의 인원이 20명인 것은 다소 과다하다.” 라고 하는데 대한 답변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회경 위원

-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싱가포르와의 교류는 너무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계속 예술교류를 유립하고만 할 이유도 없고요. “아시아와 한다면 어떤 맥락에서 교류가 되어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싱가포르가 워낙 아트&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유명하고 특화된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와 교류를 맺는 것 자체가 뜬금없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20명이라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시기로는 각 장르별 6명, 아트&테크놀로지 6명 등으로 왜 구분을 하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물론 우리처럼 장르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사업의 포커스를 맞춘다면, 만약에 아트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할 것이 많다면 그것에 맞는 장르의 대표자들이 가시면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것을 처음 봤을 때 든 느낌은 20명이 가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였어요. 그런데 장르별 안배를 하고 아트&테크놀로지 쪽을 안배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사업을 장르별로 다 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갔다 온 이후의 성과를 모으기도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여태까지 계속 교류를 해왔고 사전답사도 하셨다고 하니까 중요한 몇 가지 사업에 대한 안을 가지고 리서치를 가야 깊이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안 그래도 저희가 11월 초에 싱가포르 사업 수행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차례 개최를 해서 예술분야별로 기획자를 포함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가 특화되어야 하니 전 장르에 오픈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고 관심이 있는 예술가 또는 예술장르를 데리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국제예술공동기금’이라는 사업의 취지 자체가 장르별로 안배가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르별로 구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던 것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잘 수용해서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경 위원

- 장르별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트테크놀로지에 최적화된 분들을 모시고 가면 된다는 것이죠.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시 정리를 하자면 20명이 과도하고 과소하고의 문제가 아닌 적절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안)을 만들 때 참고하라는 것 같습니다.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예.

○김기봉 위원

- 다른 나라와의 상호교류는 여러 나라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서치의 목적이 공동기금조성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술위의 해외교류사업 중에 공동기금조성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동기금조성을 한다고 했을 경우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 예술위의 기금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기금이 있어서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16페이지입니다.

사업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국제예술공동기금이라는 사업 프레임 내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3년 간 파트너 국가가 영국, 독일, 덴마크 그리고 싱가포르와 2020년과 2021년에 사업을 할 텐데요. 영국, 독일, 덴마크 등 1개 국가와 2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요. 이게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6억을 주면 영국에서도 6억을 주고요. 저희가 5억을 주면 덴마크에서 5억을 줘서 1:1 매칭을 가지고 저희는 저희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상대국에서는 상대국 예술가들을 그쪽 펀드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싱가포르와 MOU를 체결할 당시에 저희가 매칭펀드로 이 사업을 운영한다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펀드 자체는 조성되었지만 이게 1:1로 같지 2:2로 같지 3:1로 같지에 대한 %의 논의는 향후 논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기봉 위원

- 그러면 16쪽에 영국, 독일, 덴마크와의 파트너를 구축을 했는데요. 이때 비용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영국 같은 경우가 가장 잘 되었던 케이스였고요. 가장 처음 시작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5억 원, 영국이 12.5억 원으로 총 25억이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이때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들은 얘기인데요. 정확하게 매칭은 안 되었지만 어쨌거나 한국과 독일 간 교류의 내용이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8,000만 원 독일도 8,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 저희 5억, 덴마크 5억 정도의 비용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봉 위원

- 예,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국제예술공동기금 사업이 언제 처음 시작이 되었죠?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2016년도 영국예술위원회와 MOU체결을 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최근 3년간이 아니라 그때 시작한 사업입니다.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맞습니다.

○최창주 위원

- 10페이지 리서치 프로그램을 보면 대상자가 스텝들만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효과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요.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일단은 저희가 2020년과 2021년 싱가포르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예술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에 싱가포르와 사업을 해 왔든지 아니면 아트&테크놀로지에 관심이 있고 아세안과 협력을 원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데려갈 것인데요.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가 아트&테크놀로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리서치를 할 때 스텝 자체가 말 그대로 스텝이 아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술가를 포함해서 기획자 1명씩으로 해서 20명을 말씀드렸는데요. 20명이 조금 안 되는 규모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와 사업을 해봤거나 아트&테크놀로지에 관심이 많은 대상자를 데리고 가되 사전에 프로그램 명단을 구성하기 전에 싱가포르 예술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싱가포르 측 또한 저희 측과 협업을 희망하는 단체를 뽑아서 사전에 매칭한 다음에 매칭이 잘 된 단체를 위주로 해서 데려갈 예정입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효과는 뭐냐는 것이죠.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효과는 싱가포르에 대해서 2020년 ~ 2021년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싱가포르 문화예술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단체와 어떤 주제로 사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뽑느냐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싱가포르를 자주 갔어요. ‘싱가’라는 것이 뭐냐 하면 사자입니다. 사자춤을 서로 교류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연출가, 안무가, 작곡가 및 기획자로 구성한다고 해 놓고 지금은 단체를 뽑는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나종영 위원

- 제가 소위원회에서 한번 봤는데요. 이것은 사전 리서치잖아요? 전체 사업개요가 설명이 되지 않으니깐요. 전체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사전 리서치를 한다는 말이 생략되니까 최창주 위원님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전체 사업은 이만큼인데 그 사업을 위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설명이 되면 좋은데요. 전체 사업은 6억 쯤 될겁니다.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예, 6억 4,300만 원입니다.

○나종영 위원

- 그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대행기관이 가서 살펴보면 좋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그 설명이 빠져 버렸는데 그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예, 6억 4,300만 원 중에서 5억 이상이 본 사업에서 추진이 되고요. 이번 연도에는 덴마크와 협업을 했기 때문에 덴마크 사업에 5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 8,100만 원은 그 다음 국가와 협업을 위해서 남겨두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예산을 갖고 '리서치'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김선출 감사

- 우리 위원회의 국제교류사업. 제가 기억나는 것은 레지던시 부분과 해외에 우리 예술단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그리고 특이한 것이 양쪽에서 공동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유럽 쪽으로 했다가 '신남방정책'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선 잘하고 있는 싱가포르 쪽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우리 위원회가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 비전과 전략 등이 있는 것인가? 우리 위원회는 한국 내에서 예술의 국제교류 부분에서 어느 지점과 어느 포션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각 장르와 세대 구분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국제교류는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국제교류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북방정책도 있지 않습니까? 몽골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고 중국과도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예, 맞습니다.

○김선출 감사

- 그리고 시작한 공동기금 같은 경우 얼핏 생각하면 임시방편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경 위원

- 지금 올라온 주관처 공모는 그야말로 리서치를 하기 위한 스텝을 공모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술위 측에서 전문가들을 알아보고 계시는 거죠?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예, 맞습니다.

○이희경 위원

- 왜냐 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제가 아는 분만해도 그쪽과 굉장히 긴밀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이 파악되어 있다면 그런 분들의 의견을 잘 수합해서 가시기 전에, 가서 무조건 보면서 한다는 것보다는 몇 가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리서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두 차례의 자문회의를 개최했고요.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관처 공모가 나감과 동시에 12월 중에 3~4차례 정도의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 10년 이상 거주하시고 책도 내신 교민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싱가포르 문화예술이 어떤지에 대한 20장짜리 용역보고서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가 예술가를 선정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학습을 시켜드리고 공유를 하면서 싱가포르가 어떤 문화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홍구 위원

-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고요. 저도 오래 전에 싱가포르를 초청으로 가서 미술 인프라 등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나오면 저한테도 1부 보내 주십시오.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추가 논의가 없으시죠? 이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직접 교류일 경우 교류의 목적을 정확하게 설계하고 강화하는 장치를 추가해 달라는 요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류상 표현으로는 20인 이하니까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설계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 논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요.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의사봉 3타)

####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안건은 2019년 청년국제예술역량강화 성과공유회 주관처 선정 지원심의 결과보고입니다.

이 건은 장계환 본부장을 대신해서 임재연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업무의 담당자가 아니라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청년국제예술역량강화 성과공유회 주관처 선정을 위해 10월 25일 전체회의 의결을 올렸고요. 그것에 따라서 2019년도 청년국제예술역량강화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주관처 공모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이 10월 28일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 주관처공모 접수현황 보고 및 공모기간 연장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저희가 한 차례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공모를 연장했습니다. 연장을 해서 총 19일간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청년국제예술역량강화지원사업 성과공유회 주관처 공모에 2건이 들어와서 11월 22일 지원심의가 열렸습니다.

지원신청 접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19일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공모기간 연장계획 1회가 수립되어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지원신청 대상은 청년국제예술역량강화 성과공유회 운영 및 사업홍보가 가능한 문화예술단체 및 법인입니다. 연장 끝에 총 2건이 들어왔습니다. 약 1억 8,500만 원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일반 분야 5명으로 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작위로 추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공유회의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으므로 적격자 지정보다는 무작위 추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 목요일에 PT심의, 온라인 심의로 진행해서 심의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2건이 들어왔는데 2건 중에 1건이 필수 제출서류인 사업제안서를 누락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되어서 나머지 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주)뉴스씨에스브이’ 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성과공유회의 주요 취지를 말씀드리면 청년사업에 대해서 과정과 실패를 지원하고자 했던 사업목적에 맞게 실제 결과물보다 활동과정에 대한 공유 및 선정절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요. 1월말이나 2월 정도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안건번호 제 778호 청년국제예술역량강화 성과공유회 주관처 선정 지원심의 결과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종영 위원

- 1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5명이 문화일반 분야에서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참 답답한데요. 심의를 한 것이 아니라 서류 결격사유로 인해서 떨어졌잖아요? 2개 단체가 공모를 해서 1개 단체가 서류 결격으로 떨어졌어요. 1개 단체를 심의했어요. 의문스러운 게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홍보를 했을까? 진정으로 했을까? 1억이라는 돈을 주는데 2개 단체가 들어와서 1개 단체가 서류제출로 인해서 누락이 되고요. 1개 단체를 심의를 했겠어요? 1개 단체가 들어왔으니까 쫓겠죠. 심의총평을 읽어봐도 별건 없어요. 1,000만 원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받기가 힘든 구조거든요.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을 주는데 안 되면 재공모를 해서라도 들어오게 해야죠. 2개가 들어와서 경합을 한 것도 아니고 1개 단체는 서류제출 누락으로 떨어져서 1개 단체에 주는 것은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 국민의 세금인데요. 그런 점은 예술위원회 위원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면 3차 공모를 해서 경쟁을 붙여야죠. 2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경쟁한 것도 아니고요. 필수 제출서류 누락.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부를 떠나서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무처나 직원들이 고민을 해 줘야 해요. 이것은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5,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1억이라는 돈을 주는데요. 1개 단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줄 수밖에 없죠.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구요. 주관처라는 데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공모가 나가기 전에 저희도 팔방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지원해 보라고 사전에 아는 단체와 이야기를 들은 단체에 의뢰를 했는데요. 연말이기도 하고 일들이 많이 몰려서 지원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건밖에 안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 1분은 결격이어서 나머지 단체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청년해외진출 주관처 공모 지원심의 결정 내역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뉴스씨에스브이' 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한 단체라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바로는 사업을 수행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연도 추진을 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도 있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3차 공모를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신청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추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러면 왜 꼭 1억을 줘야 해요?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예산 배분이 청년사업 5억이면 1억 정도가 성과공유에 대한 사업입니다.

**○나종영 위원**

- 예를 들어 역량강화 성과공유회를 하는데 지역 등에서는 1억 이라는 돈을 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유연하게 3,000만 원을 줄 수도 있잖아요? 1억이라는 것을 정해 놓으니까 지원을 못하죠. 그러면 작은 돈이라도 나눠서 줘야죠. 1억이라고 하나까 2개 단체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1개 단체는 필수 서류가 제출이 안 되었어요. 누락이

아니라 미비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유연하게 판단하고요.

○이희경 위원

- 지금 이 사업은 지난 회의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국제예술 역량강화라는 사업,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하거나 해외와 교류할 수 경험이 있는 단체가 많이 있겠냐?” 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은 국제적인 것 교류 때문에 예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3,000만 원으로는 추진이 안 될 테고요.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예, 맞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사전 리서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별로 응모를 안 한 것이라고 하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과연 이런 종류의 사업이 계속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전효관 사무처장

-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나왔던 얘기와 유사한 것 같아요. 행사를 대행하는 성격인데요. 행사를 대행하려면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예를 들어 공연에서 어떻게 구성하고 파급력 같은 것을 가질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요. 모두 종료된 시점에서 이것을 모아서 행사를 한다는 성격의 것들은 내년부터 운영방식 등을 바꿔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단순 행사에 많은 예산을 넣는 것도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 위원

- 저도 한 말씀 보태자면, 사실 이룬데 주관처를 요구하기도 어렵고요. 이것을 기획하고 집행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거의 모든 장르를 포괄해서 국제교류를 해야 하는데 어느 회사가 그것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차라리 장르별로 구분해서 시각파트와 공연파트를 나눠서 한번 응모를 받거나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하기는 이게 더 편할지는 몰라도 실제 효율성이 높은가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2건이 접수되었는데 1건이 사업제안서가 누락되었으니까 서류상의 문제 아닙니까?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예.

○김기봉 위원

- 그러면 서류가 들어오면 1차로 사무처에서 서류조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보고 그 다음에 서류가 미비 되었으면 심의위원회에 안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건만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건만 올렸을 때 1건만 가지고 주관처를 선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박종관 위원장

- 행정 절차상의 문제니까요. 더구나 이것은 한번 유찰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고요. 답변에 추가로 질문을 더한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서류결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지원신청서와 사업제안서, 사업제안서가 결국은 PPT자료입니다. PPT자료를 필수 제출 서류로 명시했는데 사업제안서를 아예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결격인 것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사업제안서를 안 냈으면 심의대상 조차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보면 제공모를 했을 때 1건이라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규정도 있을 텐데요.

○박종관 위원장

- 감사부장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김기용 감사부장

- 전체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감사부 입장에서 많이 느끼는 것인데 이것은 민경보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이것은 용역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위원회의 예산 사정상 어렵고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 사실 민경보 방식이 아니라 용역계약 방식으로 적용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찰이 된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제안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사의 제외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식의 민경보로 용역사업을 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감사부장이 말씀대로 사업의 구조개선을 할 확률이 있습니까?

○전효관 사무처장

- 저도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요. 기금이어서 지원사업구조로 사업이 세팅되어 있어서요.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성격은 용역입니다. 용역업체를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예산구조가 용역비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사업으로 편

제되어 있어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김기용 감사부장

-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10건 정도가 됩니다.

○박종관 위원장

- 10건은 점진적으로 원칙 안에 집어넣어서 집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김기용 감사부장

- 예, 맞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더 근본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국제청년예술역량강화는 2019년도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고요. 평가시스템 조차도 처음 하는 것이라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수순상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올해 44개 단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한다는 면에서 심의위원들이 걱정한 단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하면 위원회일지라도 심의위원들의 판단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업구조개편, 성과공유라는 것을 정해놓고 어떻게 이 사업평가를 하는 주관처를 적용하여 심의하고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을 전제로 지금 있는 심의결과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영 위원

- 용역사업으로 해서 '(주)뉴스씨에스브이'에서 하는데요. 읽어보니까 44개 단체를 모아서 국제교류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4개 단체에 대한 예술위원회에서..... 물론 이 용역을 받는 주관처를 신뢰하겠죠. 그렇지만 청소년예술네트워크구축 29개 단체, 청년예술교류역량강화 15개 단체에 대해 예술위원회에서 봤을 때 이게 맞는지?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은 용역단체 1개는 서류미비로 떨어졌고요. 1개가 들어왔는데요.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4개 단체에 대해 '(주)뉴스씨에스브이'가 할 수 있는지 검증이 되었을까? 검증을 안 하셨겠죠?

○이희경 위원

- 이 단체는 저희가 선정한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청년국제예술역량강화라고 하는 사업이 청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혹은 성과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시너지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별도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억이 적정하냐의 문제를 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

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정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볼 것은 여러 가지 조건상 한번 연기가 되었고 평가라는 게 올해 회계연도 안에 끝나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순상의 문제까지 고려해서 지금 행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나타난 문제니까 결과를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로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은 어디에 써요?

**○김선출 감사**

- 총괄해서 한 자리에 모아서 전시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요. 공연도 하고 자료도 낸다는 것입니다.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 용역 등 행사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련의 단체들이 활동한 과정에 개입도 하고 모니터링도 해도 연말에 이런 성과를 공유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박종관 위원장**

- 지금 감사님께서 지적하신 연초부터 설계하여 평가시스템을 작동해서 연말에 성과공유를 할 수 있게 설계할 수는 있나요?

**○나종영 위원**

- 그러면 의문이 드는데요. 1억이 들어가요?

**○강홍구 위원**

- 들어가죠.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44개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인터뷰를 하고 홍보하고 행사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1억이라는 비용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평가시스템을 초기부터 설계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개선과 개편의 여지가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예.

**○전효관 사무처장**

- 이런 형식인데요. 사업의 PM 같은 것을 하나 선정해서 용역 업체가, 말하자면 감독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의 지휘 하에서 행사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식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런 문제도 있고요. 아까 임 과장의 보고에서는 연말에 설계하다보니까 역량 있는 평가단체들이 일이 쌓여서 여기에 지원을 안 한다는 문제도 있으니까 조금 서둘러서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보완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설계 자체는 저희가 연중에 했지만 이 사업이 종료되고 보통 11월이나 12월 중에 성과 공유회를 하니까 그때 공모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원신청 건수가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미리 계획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말씀드린 대로 사업만을 하지 않고, 특히 청년이고 국제예술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성과공유회를 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으로 풀리는 순간 단점들이 나타난 것이니까 즉시 개선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그리고 올해는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은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올해에 얻은 경험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하나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분들이 하는 과정 자체를 기록으로 다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나가야 할 것인지? 왜냐 하면 보통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냥 흐지부지되고 바쁘게 일하다보면 비슷한 시기에 와서 같은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단체에게 평가보고서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만든 책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만들어서 남겨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내년에 사업을 개선하겠다고 하지 말고 올해 사업을 평가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희경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훌륭한 텍스트를 통해서 이런 성과가 다음에 이어져서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즉시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임재연 국제교류부 과장

- 맞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신가요?

○강홍구 위원

-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나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처럼 하나의 지원자가 올라와서 된 경우에는 간략한 사업제안서나 요약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가 있어야죠.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종영 위원

- 저는 44개 단체가 사업수행을 했는지 알았는데 사업수행 결과 자료를 검토하는 것인데 예산을 따져보세요. 용역비인데 400개 단체도 아니고 44개 단체에 1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예산을 꼼꼼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류검토잖아요?

○강홍구 위원

- 서류검토가 아니라 국제교류까지 들어갑니다.

○조기숙 위원

- 나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반대하는데요. 이것은 꼭 필요하고요. 청년국제예술역량강화 성과공유회를 하는데요. 이것은 국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글로벌하게 잘 하면 1억도 부족합니다. 글로벌하게 잘 하기를 바랍니다.

○나종영 위원

- 이것은 이미 성과를 낸 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강홍구 위원

-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고 국제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조기숙 위원

- 그것을 갖고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알리느냐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과도 연관이 된 문제입니다.

○나종영 위원

- 44개 단체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전효관 사무처장

- 사업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출 감사

- 조금 더 사업 증반으로 앞 당겨서 용역사업으로 안 되고 민간경상보조로 된다고 하더

라도 선정할 때도 미리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관찰할 수 있고 사전 준비가 충실하게 될 수도 있고요. 연말에 사업도 잘 모르는 기획사들한테 “좋은 게 있으니까 응모해 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나 위원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른바 성과공유회라고 이름을 정해놓고 단순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성과공유회의 분명한 결과로써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사업을 부양해 줘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 논의가 없으시면 논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부 찬성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이 안건은 기획조정부 강병주 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예, 779호 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작년과 올해 소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소위원회 위원단이나 위원회 위원 교체 시에 적합하지 않다. 조금 더 적합하게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

것을 검토하다보니 소위원회 근거가 되는 문화예술진흥법 조문번호가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었음에도 현행화를 시키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어서 이 부분을 수정하려고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자료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3조에서 소위원회의 구성의 근거가 되는 문화예술진흥법을 현행이 '법 제23조의 11'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위원회 직무를 규정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현행은 '법 제30조'로 바뀌어져 있어서 현행화하기 위해서 개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4조에 보시면 소위원회의 임기 중에 결원에 대한 사유를 '사고로 인하여'라고 표시되어 있고 4항에는 '심신상의 장애'로 되어 있으며 5조에도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한 표현이 부적절하다. 적당한 용어로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로 바꾸고 '심신상의 장애'는 아예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5조의 '사고로'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바꾸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소위원회 간사를 지정하는 것을 현행에서는 '소관부서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간사는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간사를 '사무처 유관부서의 장'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의결정족수에 있어서 지금은 '소속위원 과반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재적 소위원 과반수'가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려고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5조에 '소위원장'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제목을 '소위원장의 위촉'이라고 추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예, 강병주 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바꾼 안이라서 약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기봉 위원

- 소위원회 임기와 관련해서 2번 항인데요. 다른 소위는 위원들이 추천해서 소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바뀐 다음에 새로 구성하는데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현장소통 소위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소위원을 선발하는데요. 이 조항에 의해서 만약 새로 오신 위원님이 기존의 현장소통소위원을 재구성하자고 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정확하게 어디죠?

○김기봉 위원

- 4조2항입니다.

“각 소위원회 임기는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1개월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셔서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소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장소통소위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선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외 규정을 하나 둘 수는 없는지?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단서조항으로 “다만, 공모를 통해서 선출된 위원은 임기를 보장한다.”

○김기봉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성안을 해 보죠. 그 뒤에 ‘다만’ 조항을 넣으면 될까요?

○나종영 위원

- 규정이나 법규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화가 되어야 해요. 어느 특정 소위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안 맞는 것이죠. 규정이 있으면 특정 소위가 거기에 맞춰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특정한 것이 생긴다고 하면 또 만들 겁니까?

○김기봉 위원

- 필요하다고 하면 만들어야죠.

○나종영 위원

-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규정이나 법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맞죠.

○김기봉 위원

- 아니 그래서 규정에도 예외규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나종영 위원

- 예외규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규정이 아니고 세칙이나 운영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특정 사항이나 특정 소위를 위해서 단서조항을 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김기봉 위원

-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이라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종영 위원

- 그런데 현장소위는 현장소위의 편익을 위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지 모든 소위가 공모를 하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규정에 어떤 소위를 공모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

까? 그러면 어떤 소위는 공모를 한다고 근거를 가져야죠. 공모를 위한 소위는 없어요.

○김기봉 위원

-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 “소위는 위원들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소위를 공모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는데 “공모한 소위는” 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는 것이죠.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런데 과정으로 보면 현장소통소위는 현장의 대표성 때문에 공모 절차를 거쳤는데요. 만약에 위원회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3개월 했는데 이것을 종료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러면 다른 소위도 마찬가지로.

○조기숙 위원

- 다른 소위도 똑같죠. 임기 짧아요.

○전효관 사무처장

- 공모를 해서 됐을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두는 것도 운영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공모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인데요. 위원회의 의결권을 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임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의결 내용에 따른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러면 1년을 보장해 줘야 해요. 소위원회가 과반수 구성과 관계없이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원회가 1년인데 누가 3개월을 하려고 소위원회에 들어옵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3개월 하려고 들어옵니까? 이것도 살펴 보시면 좋겠고요.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새로 구성된 후 1개월까지로 한다.” 그것도 법률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취지가 위원님들이 새로 구성되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 당시 위원님들이 정하는데요. 이 규정은 새로 구성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종영 위원

-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어느 특정 소위는 “공모를 했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한다.” 그러면 나머지 소위도 보장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공모의 형식만 정한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이 소위만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임기를 정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내용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출 감사

- 그런데 취지가 이것 아닙니까?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그쪽 위원회 성격에 맞는 소위. 위원회가 우선이니깐요. 그 위원회의 의견을 쫓아서 소위가 구성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나종영 위원

- 그런 취지죠. 공모든 공모가 아니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공모라고 해서 임기를 보장하지 말자는 취지로 이것을 만든 겁니다.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위원회가 새로 구성된다고 하는 것은 새로 구성된 위원회의 뜻을 존중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모라고 해서 임기를 다 보장한다는 것은.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공모라는 의미보다 위원회가 이 소위만큼은 계속 되기를 바라는 소위가 있지 않습니까?

○나종영 위원

- 어떤 소위가 그런 게 있어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이것은 연속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나종영 위원

- 다른 소위도 똑같아야죠. 현장소통이라고 해서 공모를 했던 공모를 안 했던 규정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불평등한 것이죠. 그것은 공모할 때 이 규정을 숙지하고 와야죠.

○김선출 감사

- 그렇게 되면 다른 소위도 “공모를 하겠다.” 라고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체계가 흔들리죠.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본부장님이 제안을 하신 것처럼 위원회의 논의에 따라서 여지만 열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나종영 위원

- 일반적으로 해야죠. 특정 소위라고 하지 말고요.

○박종관 위원장

- “단, 위원회가 필요하여 소위원회 임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예외로 한다.” 로 ‘다만’조항을 넣자는 것인데요. 그리고 “현장소통소위는 특별하냐?” 라고 물어보면 특별합니다. 아르코혁신안에 따른 구성이잖아요.

○나종영 위원

- 그러면 다른 소위도 그렇게 해야죠.

○박종관 위원장

- 아니, 다른 소위도 모두 특별한데요. 7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다면 소위원회 구성은 개편해야 하거든요.

○나종영 위원

- 필요해서 하는데요. 왜 현장소통만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박종관 위원장

- 그것은 저희 위원회 범위를 벗어난 논의를 통해서 만든 개혁안의 결과잖아요.

○이희경 위원

-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 사업과 관련된 소위인 정책소위나 남북교류, 국제교류 등은 저희 사업과 맞물려 있잖아요? 그런 것 말고 성평등도 마찬가지로 예술가치확산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1년 임기로 임명장도 다 주셨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그 프로세스에 맞게 결과물을 내려고 계속 뭔가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바뀌었다고 해서 “중단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박종관 위원장

- 그것은 위원회가 판단하면 되거든요.

○이희경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담당하시는 위원님들이 와서 얘기를 하시면 되니까요. 그런 것을 열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법이나 규정은 결국 현실을 반영한 약속이던 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절대적으로 규정의 원칙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종영 위원

- 그러면 “위원회가 판단한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단, 위원회가 필요하여 소위원회 임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나종영 위원

- ‘단’ 이 아니라니까요.

○조기숙 위원

- 위원회 임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4조 임기와 관련한 안의 개의(안)을 만들어 주시죠.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4조 2항을 단서조항 없이 하나로 한다는 것이죠?

○나종영 위원

- 그렇죠. 일반적으로 해야죠.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제4조 1항에서 원칙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의 부분을 2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이 새로 구성될 때 정하면서 소위원회 임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2항에서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게 ‘다만’ 조항이죠. 저는 나 위원님께 여쭙보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왜 ‘다만’ 이라는 조항을 가지면 안 되나요?”

○나종영 위원

- ‘다만’ 조항이 아니라요. 1항의 ‘다만’ 조항이 2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단서를 달아요.

○이희경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2항에서 “각 소위원회 임기는 위원회가 정하는 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1개월 등의 규정을 아예 두지를 말고요.

○김기봉 위원

- 1번 조항의 ‘다만’ 조항이 2번이 아닌데요.

○나종영 위원

- 그러니까 2번 조항이 ‘다만’ 이라니까요.

○박종관 위원장

- 1번 조항의 ‘다만’ 조항이 어떻게 2번이 되죠?

○나종영 위원

- 일반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무처에서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각 소위원회 임기는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라고 하지 말고요.

○이희경 위원

-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한다.”

○김기봉 위원

- 1번 조항의 ‘다만’은 결원이 생긴 경우고 2번 조항은 새로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나종영 위원

- 자꾸 현장소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현장소위가 공모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공모라는 것은 특별하게 하신 겁니다. 규정에 없지만요. 그러면 다른 소위도 똑같이 해 줘야 합니다.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는 말이죠.

○박종관 위원장

- “공모를 통하여” 라고 할 경우에도 다른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면 임기를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하려면 위원회 임기와 소위원회 임기를 맞춰야 하는 것이네요.

○나종영 위원

- 그런데 못 맞추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희경 위원

- 그런데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같이 안 끝나잖아요?

○전효관 사무처장

- 그래서 “과반수이상일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끊어서 일치를 시켜야 지금 생긴 혼돈은 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위원회가 과반수를 교체할 때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2항을 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공모와 상관없이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고 하면 공모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위원회가 정하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렇다고 하면 2항은 삭제해 해도 됩니다. 있을 필요가 없는 조항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안을 내고 의결합시다. 안을 정리하시죠.

○조기숙 위원

-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임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넣고요.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경 위원

- 본부장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강홍구 위원

- 저도 개인적으로 본부장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나종영 위원

-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조기숙 위원

-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임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임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의결내용에 따른다.”

○나종영 위원

-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고 해야죠.

○박종관 위원장

- 예, 제4조 2항을 “단, 소위원회의 임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의결내용에 따른다.”라고 수정안을 냈습니다.

○김기봉 위원

- 동의합니다.

○김선출 감사

- 그러니까 2번의 “1개월까지로 한다.”까지는 살리고 뒤에 붙이는 겁니까?

○전효관 사무처장

- 자구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선출 감사

- 그러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 소위원회는 임기를 더 연장한다.”라고 했는데요. 다음 위원회가 과반수이상 와서 “종료시킨다.”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럼요.

○김선출 감사

- 그러면 위원회가 임기를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박종관 위원장

-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과반수’를 넣은 것이죠.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나 위원님도 여기에 동의를 해 주시죠.

○나종영 위원

- 자구는 정확하게 해서 해 주세요.

○박종관 위원장

- 현재 올라와 있는 안은 “단, 소위원회 임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의결내용에 따른다.” 라고 넣는 것인데요.

○나종영 위원

-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라고 해야죠.

○박종관 위원장

- 내용이 같으니까요. “단, 소위원회 임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전부 다 의미가 없거든요.

○나종영 위원

- 그러니까 사실은 삭제를 해도 되는 조항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기본적인 원칙과 특수한 적용의 문제니까 단서조항으로 처리하는 게 구조상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기숙 위원

- 좋습니다.

○강홍구 위원

- 그렇게 하시죠.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은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강병주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제780호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2일 예술위원회가 선포한 새로운 비전전략을 위한 후속조치로 사무처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조직혁신 분야 5번 혁신의제로 제안했던 “예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개방직 직위를 도입 운영”하기 위하여 직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1페이지 사무처 조직도 개편안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극장장과 관장 직제를 신설하기 위해서 예술관장과 미술관을 본부급으로 편제하고 하위에 소관부서를 배정했습니다.

예술극장에는 개방형 공모직으로 극장장을 채용하고 소관부서로 극장운영부와 무대기술부를 배정했습니다.

미술관에는 개방형 공모직으로 관장을 채용하고 소관부서로 미술관운영부를 배정했습니다.

이러한 직제 변화에 따라 예술공간운영분부는 폐지를 하고 그 하위에 있던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을 공연예술본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관부서였던 아르코예술기록원은 문학시각예술본부로 배정했습니다.

아울러 비전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부서로 전략사업부를 신설하고 경영전략본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협력부와 순회사업부를 통합해서 지역협력부로 만들고 예술환산본부 아래

에 두었습니다.

보통 임원실 직하 부서는 실로 명칭을 운영하고 있기에 저희도 감사부를 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추가로 현행 직제에서 임기직은 활용을 하지 않고 삭제하고 임기직 1명을 일반직 5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32페이지의 각 조문에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을 구체화 하였고요. 33페이지부터는 이러한 직제 개편으로 변경된 직제와 명칭들을 다른 제규정에도 현행화 시키기 위해서 개정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예, 봄에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할 때도 예고를 해 드린 바대로 비전체계를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입니다.

1처 5본부 20부의 현행을 1처 4본부 1극장 1관 1실 19부로 조직 개편을 하는 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종영 위원

-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6조에 조직에서 분명히 감사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감사부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실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감사부와 감사실, 감사부서는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보니까 감사실이라고 직제를 개편했어요. 개편을 했는데 부칙에서는 계속 감사부장을 감사부서의 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이라고 직제를 명확하게 바꾼 이유와 감사부서라고 말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감사부를 감사실로 바꾸었기 때문에 직제 규정에서도 감사실로 바뀌어야 하는데요. 부서 명칭이 특정되면 그 명칭이 바뀔 때마다 다른 규정을 다 고쳐야 합니다.

#### ○나종영 위원

- 그것이 아니라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감사실로요. 감사실로 바뀌었는데 뒤에 보면 계속 감사실이라고 안 하고 감사부장을 감사부서장으로 하고 감사부도 감사부서 직원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감사부장, 감사부 직원이라고 하면 감사실장, 감사실 직원으로 다 바꾸어야 하거든요.

#### ○나종영 위원

- 개정(안)에 감사실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틀리냐고요. 감사실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굳이 감사부서의 장이라고 했는데 뭐가 틀리냐고요. 그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뒤에도 바뀌었습니다.

○나종영 위원

- 어디를 바꿨어요? 15조를 보세요. “감사부 직원으로 한다.”, “감사부장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단순하게 명칭만 바뀌는 부분은 부칙으로 해서 뒤에다 별도로 명칭만 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34페이지를 보시면 “감사 중 ‘부장’을 ‘실장’으로 하고, ‘감사부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라고 뒤에 명칭을 개정해 왔습니다.

○나종영 위원

- 이해가 안 되는데요. 6조의 조직이 상위 규정 아닙니까? 거기에 분명히 감사실로 바꾸었는데 왜 차꾸 뒤에서는 감사부서의 장이라고 하고요. 15조를 보면 “감사부장”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지금은 감사실로 바꾸잖아요.

○나종영 위원

- 그러면 모두 감사실로 해야죠.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그런데 이후에.

○나종영 위원

- 왜 이후를 생각해요.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면 또 바뀌야 하니까요.

○나종영 위원

- 이해가 안 되네요. 뭘 또 바뀌요?

○전효관 사무처장

- 33쪽에 감사부장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 이유는 지금까지 감사부장이라고 특정되어 있던 것을 감사라는 업무를 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는 것으로 바꾼 것이고요. 그 명칭은 실장으로 한다고 한 것입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러면 다른 직제의 조직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6조 조직에 대해서 했으면 통칭이 똑같아야 합니다. 똑같은 것이 맞습니다.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안 바뀌야죠.

○박종관 위원장

- 향후 추가 조직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용이한 구조로 하는 것이 현실이죠.

○나종영 위원

- 지금 명칭 자체에 감사부가 없어요. 감사실로 바뀌었잖아요?

○강홍구 위원

- 그래서 감사부서라고 바꿨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감사실의 역할이 바뀐 것도 아닌데요.

○나종영 위원

- 그러면 감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않아요.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대부분 다른 부서도 그렇게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인재성장부지만 예전에는 총무부, 인사부로 명칭이 바뀔 때마다 인사부장 또는 총무부장은 명칭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사담당부서장'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간에 인사담당부서장은 따라 가는 것입니다.

○나종영 위원

-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강홍구 위원

-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사부로 하든 인사실로 하든 업무의 변화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죠.

○나종영 위원

- 그러면 인사부라는 것은 인력개발도 있을 것이고 인사조직도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규정에 없는 인사부서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규정에 없는데요. 법체계가 없는데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쳐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규정의 일반화를 시켰을 때 직무를 설명하면서 부서의 장이라는 표현으로 통일시키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인사담당부서' 등의 표현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나종영 위원

-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너무 쉽게 쓴다는 것입니다. 감사실로 격

상해 놓고 계속 해서 그것을 감추고 있잖아요. 바꾸려면 정확하게 바꿔야죠.

○김선출 감사

- 제가 부서를 보니까 보통명사와 고유명사가 달라져야 하는데요.

○전효관 사무처장

- 부서라는 것은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종영 위원

-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왜냐 하면 지금 감사부가 없어요. 34페이지를 봅시다. 좀 정확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감사부가 없잖아요?

○강홍구 위원

- 그러니까 전에 감사부 직원으로 했던 것을 감사부서의 직원으로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나종영 위원

- 그러면 감사실 직원이라고 해야죠.

○강홍구 위원

- 꼭 감사실 직원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없죠.

○나종영 위원

- 6조에 감사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페이지에 가면 없는 감사부의 직원을 감사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감사부가 없잖아요.

○전효관 사무처장

- 부서에 따라서 세부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모두 수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강홍구 위원

- 그것을 언제 다 수정하겠어요.

○조기숙 위원

- 그러면 감사부를 놔두시면 어때요? 용어 통일을 바랍니다.

○최창주 위원

- 저는 나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33페이지를 보면 “감사부를 감사부서로 한다.” 그러면 맨 처음에 감사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감사실로 한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실장으로 한다고 하다가 33페이지에 가서 감사부장을 실장으로 한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냐는 겁니다. 쪽 설명은 열심히 했는데요. 1페이지로 간단하게 할 것을 33페이지 중간에 “실장으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글 장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불편해요. 그대로 “감사부로 한다.”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하세요. 우리가 관여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하면 되지만 잘못하면 글 장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기용 감사부장

- 일부만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감사실로 모든 규정은 바꿉니다. 다만, 각 조문마다 주어가 사람을 말하는 경우만 따로 명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부를 감사실로 안 바꾼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칙이거든요. 다른 규정에 조직이 아닌 사람 역할의 경우 공통적인 용어를 쓴다는 말씀입니다.

○김기봉 위원

- 감사실장과 감사부장은 직급에서 변함이 없잖아요? 직급은 그대로죠?

○김기용 감사부장

- 예, 맞습니다.

○김기봉 위원

- 그런데 부장을 실장으로 바꾸는 이유는 뭔가요?

○전효관 사무처장

- 통상 임원에 소속되는 경우 '실' 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공공기관도 감사실로 명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참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임감사 밑에 있는 사무조직을 '실'로 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서실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도 '실'로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직급의 상승 없이 명칭의 특별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명칭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관련 규정들의 개정이라고 하는 행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위원님의 지적은 옳으십니다. 그러니까 조직 명칭이 개편되었으면 여기에 따라서 규정들을 명확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옳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를 일단 기본 전체로 받으시고 오늘 의결안은 편의적인 면을 선택한 것이 있으나 이렇게 해서 사무처 운영에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근본적인 대안과 대책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즉시 위원회에서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원안대로 받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주신 의견은 충분히 계획을 잡고 차기 혹은 차차기 위원회 때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한 대안을 사무처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달아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강홍구 위원

- 예, 원안대로 하시죠.

○박종관 위원장

- 예,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창주 위원

- 사무처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박종관 위원장

-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시죠? 반대  
대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입니다.  
강병주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예, 781호 안건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원래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개정하는 규정은 위원회 운영규정, 소위원회 운영규정, 사  
무처 운영규정과 정관에 해당하는 상위 규정입니다.

본 안건은 하위 규정입니다만, 위원회에 상정한 이유는 자산운용지침 자체에서 이 지침  
을 개정하려면 자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지침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적립금입니다. 한 해 동안 적립금 운영의 목표와  
투자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공지해서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효율적  
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본 지침은 매년 자산운영위원회에서 한 해 동안 적립금 운영의 목표수익율과 점검이 필  
요한 기관별 최대 손실범위 즉 허용위험한도를 정하고 적정유동성규모를 예측해서 자산  
배분안을 매년 변경 또는 조정해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자산운용지침에 따른 전체 전략과 계획은 2019년 3월 15일 자산운영위원회에  
서 심의를 완료했고요. 자산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규정에 현행화하기 위해서 본  
지침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41페이지의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같은 경우 2016년 말 적립금 잔고가 814억 원이었습니다. 2018년 말 자산규모  
는 744억입니다.

제7조를 보시면 자산운용의 조직 체계가 도표로 나와 있는데요. 자산운용의 기본적인  
조직 체계 운용방안은 자산운용부서와 리스크 관리 부서를 구분하고 다른 부서에 배치  
해서 통제와 견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3월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자산운용부서가 문화예술후원센터에서 기획조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기획조정부였습니다. 자산운용부서가 기획조정부로 옮겨오니까 두 기능이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와 자산운용의 견제 기능이 분할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부서를 재무관리 전담부서로 다시 옮기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 부서를 다른 부서로 배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의 내용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그동안 연간 2번 운영했던 것을 기재부 기금평가단이 권고한 대로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을 종래에는 기획조정부에서 재무관리전담부서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43페이지 제9조4항입니다.

이 부분은 3월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목표수익률을 2.37%로 정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단기자금 목표수익률은 1.88%고 중장기자금은 2.68%로 정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자산운용규모와 목표수익률에 맞춰서 자산상품들이 감소해야 할 연간위험한도를 2019년 같은 경우 단기자금은 5.57억 원, 중장기자금의 경우 36.69억 원 그리고 전체 자금손실한도는 42.26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제13조입니다.

금년도 전체 운용자산은 평잔 기준으로 1,586억 원으로 정했고요. 그 중에 단기자금을 614억 원, 중장기자금을 917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종래의 규모와 다른 점은 종래에는 단기자금이 63.3%였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와 중장기를 6:4 정도로 배분했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장기와 중장기를 역전시켜서 4:6정도로 책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올해 들어서 여유자금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중장기 자산의 비중이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기자금, 중장기자금이 6:4 구조로 있다가 금년도에 4:6으로 중장기 자산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19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관리 부서를 기획조정부에서 재무관리담당부서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예,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의 중요한 근거가 문예진흥기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6년 시작된 문예진흥기금 고갈의 위기가 2017년 말에 기금 540억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 부분은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추가 5,000억까지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하는 국정목표가 세워졌고요. 일단 위기에서 벗어나서 2018년 말에 900억 대의 문예진흥기금으로 접어들었고요. 이게 2019년 12월이 되면 1,850억으로 적립액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예정대로라면 2020년 말이 되면 3,000억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 국고 500억이 넘어오기로 했던 것이 210억으로 감액편성이 되면서 애

당초 목표했던 3,000억에 이르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예진흥기금의 관리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3년 연속 최우수관리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담당자는 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 문예진흥기금을 관리하는 관리팀 차용진 차장과 담당직원이 참석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현장 예술계를 대표합니다만 회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사항이기도 합니다. 담당자들이 모두 자리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이 지침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과 전체적인 기금 재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자산포트폴리오 운용에 대한 것을 한다는 2가지 목적입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그동안 돈을 지출하는 부서와 운영하는 부서가 견제하고 있었는데 한 부서에서 그 일을 하다 보니 리스크 관리가 안 돼서 다시 그 업무를 나눴다는 의미입니다.
- 그 다음에 운용도 연 2회 하던 것을 4번으로 해서 리스크 관리나 자산관리를 강화시킨다는 것이고요. 목표수익률이나 위험한도 자산포트폴리오는 기금 전체 예산의 규모가 작을 때와 클 때의 차이점인데요. 처음에는 단기자금 중심으로 운용되다가 늘어나니까 중기자금의 비중을 높여서 6:4의 단기중심의 운용에서 중장기자금의 비중으로 많이 옮겨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기금은 근본적으로 교차 검증을 하는 시스템을 써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하는 내용이 중심이고요. 지금 경영전략본부장이 설명한 대로 기금이 늘어남에 따른 투자 방식의 변화 등을 명확하게 명문화하기 위한 자산운용지침의 개선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종영 위원**

-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목표수익률이 자산운용지침에 들어온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계속 개정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2017년에 단기자금이 1.38%였는데 금년에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기자금이라는 것은 1년 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기자금 1.88%가 나오니까?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단기자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나종영 위원**

- 안 나오는데요. 2017년보다 현재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2017년 단기자금이 1.38%였다는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 금년에 떨어졌는데 단기자금이 1.88%고요. 2017년도에 중장기자금이 11%로 잡았고 금년도 2.68%로 잡은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지

금 1년 수익률이 1.88%는 거의 없을 겁니다.

○차용진 기획조정부 차장

- 연초에 자산운용위원회에 올해 2019년도 목표수익률과 자산운용계획(안)을 올렸을 때는 저희가 컨설팅을 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를 해서 올해 금리 수준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가 좋을 것으로 전망해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금리를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고요.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단기자금 부분이 과거보다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자산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수익률을 시장 전망에 따라서 예측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은 4.32%를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자금수익률도 2%를 넘었고요. 목표수익률은 잘못 예상을 하기는 했는데 실현은 잘 하고 있습니다.

○나종영 위원

- 제가 뭘 지적하느냐 하면 과대 계상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유동성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지만 실제로 운용하는 것은 한 달이나 3개월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리가 더 떨어져요. 제가 볼 때는 1.5% 이상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차용진 기획조정부 차장

- MMF수익률은 1.6%에서 1.7%까지 나왔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런데 1.8%는 최고의 금리입니다.

○차용진 기획조정부 차장

- 상반기 때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러니까 단기자금을 1년짜리로 계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운용할 때는 1개월이나 3개월을 하지 않겠습니까?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1.5%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연초에 1년간의 목표수익률을 정합니다.

○나종영 위원

- 1년으로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운용할 때는 1년을 운용하지 않잖아요?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목표수익률보다 실적이 안 좋으면 중간에 목표수익률을 변경하게 되지만 당초 높게 설정한 목표보다도 계속 실적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종영 위원

- 변경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하라는 것이죠.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설정할 당시에는 높다고 보여 졌지만 실제 금리가 낮아져서 목표가 과도하게 설정되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2%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나종영 위원님은 은행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아마 전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실무적인 내용이거든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자산운용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으니까 그 운용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큰 틀로 보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선출 감사

-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중장기자금 목표수익률을 이렇게 높게 잡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차용진 기획조정부 차장

- 2017년도에는 높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부실자산을 회수할 때 예상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보니까 초과목표수익률이라는 부분이 높게 잡혀 있었어요.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2.68%로 중장기자금이 잡혔습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그 당시에는 예전에 잘못 투입했던 것에 대한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우리 자금 팀에서 노력해서 그것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서 목표수익률을 높게 잡았습니다.

○김기봉 위원

- 예술위의 자금운용포트폴리오는 기금과 국고로 운영이 되잖아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저희들은 기금으로만 합니다.

○김기봉 위원

- 그런데 부실자산에서 회수 예상되는, 지금 예술위의 자산 중에 부실자산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박종관 위원장

-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차용진 기획조정부 차장**

-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800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요. 절반정도는 회수를 했고 절반정도는 회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창동 민자역사 개발 사업에 150억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도 회수를 못 했고요. 2017년도에 된 것은 구리 인창동 건인데요. 25억이 회수가 불투명해서 대손충당금으로 했던 것이 회수가 되면서 반영이 예상되어 기재부 기금평가단에서 이런 것들은 목표수익률에 미리 반영을 하라고 해서 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수익률을 반영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회수를 하게 되니까 수익률이 너무 높게 나와서 나중에 평가를 잘 받게 되는 것에 대해 다른 기관의 애기가 나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현재 부실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들은 흥은동의 상가를 대물변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100억짜리였는데 손실을 반영했고요. 그것을 2015년도에 대물로 받아오면서 평가한 것이 22억이고 올해 다시 평가한 것이 46억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100억이 되면 다시 팔 예정이고요. 광주 봉천동 사업장이 있는데 그것도 전액 회수는 못 했고요. 나중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안을 드리면, 12월이나 혹은 내년 1월쯤 기금현황과 함께 위원회에 보고를 요청 드릴게요. 그때 부실자산 문제 등을 포함해서 보고하시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내용이 복잡한 것은 아닌데요. 보고안전처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12월 말은 조금 복잡할 것 같거든요. 내년 1월 위원회 때 보고를 통해서 기금의 전체적인 구조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예술인들도 알 수 있도록 보고를 요청드립니다.

**○차용진 기획조정부 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투자한 이후로는 1건도 부실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때 투자했던 것은 회수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출 감사**

- 예전에 부실 운영했던 부분의 것들을 계속해서 회수나 대의변제로 받고 있는데요. 운용에 있어서 항상 리스크관리나 견제 장치를 마련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4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이고요. 이렇게 갈 경우 올해도 높은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해서 주변 기관에서도 저희 기금관리 시스템을 탐내고 배우러 오는 기관도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최창주 위원

- 지금 보고사항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관현황보고 부실자산 전체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회의에 오기 전에 감사님께 보고하신 적이 있으세요?

○차용진 기획조정부 차장

- 매월 현황보고로 결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선출 감사

- 매월 기금운용현황을 위원장님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예 자산관리운영회의에 들어가죠.

○최창주 위원

- 산출근거를 제 앞에 놓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저는 모르기 때문에 감사님을 믿고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보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래서 1월에 보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선출 감사

- 더 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용진 기획조정부 차장

- 예, 알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제가 보고를 받으면 산출근거를 하나하나 따져요. 저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처 감사님께 제대로 보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규정대로 잘하고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안건번호 781호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반대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안건은 마지막 의결안건입니다.  
2019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잔여예산 활용 연극 및 창작뮤지컬 대본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안건을 보고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사전 논의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유선으로 연락을 드릴 텐데요. 내년도 정시공모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예술창작산실사업 안에 올해의 신작 후보, 나중에 쇼케이스 실연심사까지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당초 쇼케이스 일정을 2월 말이나 3월로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공연 일정이 초반에 잡혀서 2월초부터 진행이 되어야 하는 관계로 단체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없어서 올해의 신작 후보만 서면의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다음주 중에 협의를 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번호 제782호 2019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잔여예산 활용 연극 및 창작뮤지컬 대본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48페이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말 위원회 회의에서 올해의 창작산실 잔여예산 2억 8,000만 원을 활용한 대본공모 시범사업으로 올해 복원하는 사업들을 의결한 바에 따라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지원신청 공모를 받았습니다. 연극분야, 창작뮤지컬 분야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 결과는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연극분야는 194건, 창작뮤지컬 43건이 공모되어서 총 23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9월말 접수가 완료되자마자 대본공모의 엄청난 심의분량을 감안해서 심의위원회를 적격자지정방식으로 3배수로 구성해서 해당 장르 비상임위원님들과 협의 후 섭외 우선순위를 의뢰 드렸고요. 그것에 따라서 섭외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부터 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은 11월 1일까지, 연극분야는 분량이 많아서 11월 15일까지 예심을 진행했고요. 본심도 뮤지컬 11월 14일, 연극 11월 22일까지 예심과 2차 대면 본심을 진행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연극분야 10건, 창작뮤지컬 6건으로 도합 16건의 지원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예산도 각각 1억 4,000만 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4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구성 원칙에 따라서 구성했고 각각 분야별 7인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 표시로 나와 있는 것처럼 창작뮤지컬 분야의 경우 당초 7인으로 섭외 되었으나 예심 직전에 몸이 많이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거의 검토를 못하신 상태에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선생님 동의하에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뮤지컬분야만 6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의결과는 나와 있듯이 10건 6건씩 선정했고 예산은 모두 배정한 상태입니다. 신청을 받다보면 결격사항이 발생할 텐데요. 연극분야가 25건, 창작뮤지컬 3건이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무기명 심의인데도 불구하고 간혹 지원자신청 정보를 기입한다거나 원작을 재창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등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극분야 169건, 창작뮤지컬 40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다면 다음 주 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할 것이고요. 다음 달까지 보조금이 바로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촉박하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5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일단 전수검토제를 채택해서 했고 1차 재택, 2차 본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1차 예심에서 연극분야는 40건, 창작뮤지컬은 상위 10편씩 추천을 받았고요. 동순위가 있어서 최종 2차 본심에서는 연극 49편, 뮤지컬 16편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51페이지를 보시면 회피는 없었고 심의위원 결원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결정내역과 총평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구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현장의 수요가 매우 높고 연극분야 같은 경우는 1%대의 지원심의회가 결정되었고요. 전체로써도 3%대의 지원율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230개가 넘는 신작이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든 이 사업은 2020년도 이후에 반영되어서 현장의 요구에 화답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주 위원

- 지금 뮤지컬 분야는 공석입니다만 연극은 김혁수 위원님이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뮤지컬분야가 7명인데 1명이 신변의 사유로 참여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연극·뮤지컬을 알기 때문에 연극분야 심사위원들은 나름대로 후배나 제자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뮤지컬분야는 1명만 알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리지널 뮤지컬을 하는 전문가들을 추천했는데 혹시 전달 받으셨나요?

####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뮤지컬 분야는 김혁수 위원님이 하십니다.

#### ○최창주 위원

- 제가 오리지널 뮤지컬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20명을 추천했어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전문가도 전문가 나름이니깐요. 그리고 제가 심사위원들의 경력을 보자고 했어요. 뮤지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뮤지컬심사위원이라고 심의를 하면 밖에서 질문을 합니다. 나는 뮤지컬 분야가 아니고 전통문화라고 하지만 밖에서는 내가 뮤지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뮤지컬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게..... 제가 답답한 것이 심의위원 경력서를 보자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블랙리스트에 의해서 심사풀제가 바뀐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경력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 전통분야 올해의 신작을 하면서 담당자를 통해 경력사항을 말씀하셔서 피드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전통분야는 분명히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연극, 뮤지컬은 제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나만큼 연극, 뮤지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전혀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경 위원

- 풀 안에 있는 분들이죠?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풀 안에 있습니다.

○이희경 위원

-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으시면 힘드실 것 같기는 한데요. 다른 분야도 들어가면 이 분들이 어떤 경력인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최창주 위원

- 그래서 제가 20명을 추천했어요.

○나종영 위원

- 풀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시고요?

○최창주 위원

- 예. 물론 신청을 해야 심사위원이 되겠지만 추천을 하잖아요?

○이희경 위원

- 그러니까 그분들을 추천하지 말고 신청을 하라고 하세요.

○최창주 위원

-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사위원들의 경력서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위원님이 질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적격자심의방식에서 적격자를 추천하는 위원이 어느 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위원회는 전체가 한 팀이기 때문에 양질의 심의위원들이 구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연극, 뮤지컬을 종합해서 위원님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만, 정기공모심의 이후에는 심의위원 구성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상당수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이 사업은 2019년도 사업이라서 당시의 방식으로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내년이면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말씀드렸듯이 너무 적은 팀만 선정되어서 너무 아쉽고요. 조금 더 심의 풀이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김기봉 위원

- 지난번 연극분야에서의 중장기 지원 때 지역의 연극팀은 1개밖에 선정되지 않아서 연극협회에서 성명서까지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2020년에 적용하기로 한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번에도 보면 대분공모 연극 쪽은 194건 중에 10건이 선정되었는데 제가 지금 대충 보니까 비수도권에서 15건을 냈는데 1건도 안 되었어요. 그러면 만약 2020년도에 저희가 적용하는 쿼터를 적용한다면 1건이라도 선정이 되는 건가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뮤지컬은 대구에서 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일단 대분공모만의 사업은 아닌데요. 이 사업은 현재 지역최소보장제 제외사업이고요. 특히 대분공모사업은 블라인드심의입니다. 누가 신청하는지도 모르구요. 대분의 완성도를 봐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지역에 대한 부분은 논의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김기봉 위원

- 그러니까 블라인드심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저희가 쿼터제를 적용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건을 선정하는데 이 안에 비수권이 1~2건이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 쿼터를 적용해서 나머지 1건은 지역에서 신청된 것을 모아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는 심의방식의 개선이 되냐는 것이죠.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제도 개선 차원에서 검토는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박종관 위원장**

- 창작산실사업의 지역쿼터를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그것도 그렇고요. 대본은 단체가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쓰신 분에 대한 거주지에 가까워서요.

**○박종관 위원장**

- 지금 김기봉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위원회가 한번은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지역이 어느 정도 신청을 했는지에 대해서요.

**○이희경 위원**

- 지금 10개인데요.

**○김기봉 위원**

- 15개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전체 237개에서 15개의 지역신청이 있었다는 것이죠. 복잡한데 총량으로 237개 중에서 15개 정도의 신청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지역에서 1개가 들어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로 최소보장은 적용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창작산실과 관련해서 지역쿼터를 균형지원 차원에서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일단 창작산실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 사업은 사업계획의 충실성이라든지 수월성 외에 비중을 많이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지원심의를 제도뿐만 아니라 균형과 관련해서도 올해 정기공모 신청결과를 놓고 살펴보고 개선지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하는 지속적인 과제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감안해서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선출 감사

- 뮤지컬을 할 때 음악을 같이 본 것이죠?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작곡가와 작가가 같이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김선출 감사

- 심사평에 음악부분이 언급된 것이 있나요?

○이희경 위원

- 음악 자체를 얘기한 것은 없고 소재만 얘기를 하셨네요.

○김선출 감사

- 뮤지컬에 음악하시는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죠?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많이 얘기가 되었던 부분은 음악과 대본과의 하모니 차원에서 많이 거론하신 것 같습니다.

○김선출 감사

- 지금 지원결정액이 대본 부분에서 여타 다른 상금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번 같은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대 금액은 저희가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현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특정 개인에게 많은 금액을 주는 것보다는..... 물론 만장일치로 줄 만큼 의미가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최대금액을 고려할 수 있으나 한 분 이상이라도 반대하면 최대 지급을 사양했구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김선출 감사

- 개인적으로 엄청난 지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임벨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에 버금가는 상금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시놉시스를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나 홍보프로모션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유관단체에 이런 부분의 공유네트워킹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가의 동의를 거쳐서 대본도 같이 입수를 해서 실제 극단 제작사들과의 매칭을 통해서 제작이 될 수 있게 별도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요. 이미 신작으로 신청된 단체

중에서 뮤지컬은 없습니다만, 연극의 4개 작품이 신작에 신청을 했고 그 중에 2개 작품이 2차 인터뷰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저희가 공모를 하는 와중에 제작사와 협의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와는 별도로 내년도에 작품의 풀을 만들어서 실제 무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출 감사

-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이미 정시공모 공고를 할 때 공지가 된 상태고요. 2월 중에 별도공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선출 감사

- 가령 건축설계를 할 때 기본 수고비를 주잖아요? 최소 금액을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드린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종관 위원장

- 전체를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일정 정도의 기준을 선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연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출 감사

- 그런 부분과 대본이라는 게 문학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단행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인가?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일단 저작권이라는 것은 작가의 협의와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추후에 소통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만 이 공모 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창작에 대한 상당한 부양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제도를 잘 다듬고 적절한 제도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수요가 의외로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관 위원장

- 200편 가까운 연극의 신작과 40편에 가까운 뮤지컬 대본이 나왔습니다.

○김선출 감사

- 이 사업은 가장 필요한 공연 부분에서..... 특히 출발선이니까 중요한 부분이고 브랜드

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다만 아쉬운 점은 내년도 예산이..... 경상비를 줄이면서 전체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대본공모가 신설되어서 들어간 부분이라서 일단은 올해의 수준인 3억 원으로 편성한 상태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너무 아쉬운 일이죠.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전체 신작레퍼토리에서 창작산실 예산의 파이가 커져야 대본공모도 어느 정도 수요를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이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의결안건은 끝났고요. 보고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으로 7개의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무처장께서는 보고안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예, 63쪽을 보시면 7개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최종발표 홍보 주관처 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이 필요한 것은 두 번째 보고안건입니다.  
개방형 계약직(극장장, 미술관장) 채용 추진 계획(안)입니다.  
나머지 5건은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이기 때문에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최종발표 <차세대 열정2019!> 홍보 주관처 공모 지원대상 결정에 관한 보고를 해 주세요.

○김혜연 과장

-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최종발표 <차세대 열정2019!> 홍보 주관처 공모 사업을 진행했구요. 지원심의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공모 계획 수립 및 추진 확정을 해서 11월 6일부터 11월 21일까지 16일간 접수를 받았습시다. 11월 25일 월요일 대학로 예술극장 심의회의실에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총 접수된 건수는 2건인데요. 1억 1,800만 원이 신청접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총 1건 '제이레퍼토리'에 대한 지원금액인 5,9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적격자 4배수 지정에 의해서 예술위원회 사무처에서 2배수를 추천하고 문화일반의 세분의 위원님들께 2배수 추천을 받아서 총 5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었구요. 선정 결정 사유나 심의 제척 사항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기봉 위원

- 적격자지정원칙에 따라서 심의위원을 구성했는데 왜 여성이 한 분도 안 들어와 있습니까?

○ 김혜연 과장

- 각 위원님들께 추천 받은 명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관 위원장

- 추천 받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김기봉 위원

- 맨 마지막에 지역이나 신진, 여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인 중에 여성 1인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죠.

○김혜연 과장

-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서 2배수를 구성했구요. 당연히 지역과 여성을 안배해서 20명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 풀 시스템을 통해서 적격자 4배수로 랜덤 추첨을 돌려서 우선순위가 1번부터 40번까지 나왔습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선정되신 5인이 상위 순위에 있었던 분이구요. 홍보에 주로 초점에 맞춰져서 상위 순위에 랭크가 된 것으로 저는 짐작하

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여성분이 상위 랭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재원 위원님이나 최보규 위원님은 지역으로 안배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김기봉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일정한 T/O를 주자는 말입니다.

○김기봉 위원

- 여성이 없어서 여성을 풀에서 찾아서 추천을 한 것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이번 정기공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모두 고려해서 풀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랜덤으로 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랜덤으로 해도 일단은 순위가 나오면 섭외순위부터 보고 성비가 안 맞으면 순위를 일단 바꿉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러니까요. 그게 가능하잖아요?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예, 현재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담당자의 대답을 들어야 하고요. 지금 얘기하는 핵심은 그동안 성별, 지역, 연령을 고려하여 심의위원을 최종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돌려서 전부 남자만 나왔다고 해서 남자만 섭외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혜연 과장

-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요. 5인 중에 여성이 한 분 계셨는데 순서대로 연락을 드렸을 때 일정이 안 되셔서 다음 순위로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20명 중에 여성이 1명이 아니라면 그 대답은 답변이 아닙니다.

○김기봉 위원

- 20명 명단을 주세요.

○박종관 위원장

- 201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새롭게 적용하려고 하는 심의위원 선정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된 것이라면 이런 하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김혜연 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해 주신 부분은 참고해서 5명 순위에 안배가 꼭 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회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20명의 명단을 주세요.

○김혜연 과장

-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를 하면 되는 것인데요. 특히 6기 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에 관한 형평성을 유지하겠다고 여러 번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희경 위원

- 제가 지난번에 서면심의를 할 때도 제안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심의에 올라올 때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시니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모르는 분야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성별, 세대 등을 표기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박종관 위원장

- 물론입니다. 그리고 공정심의를에서 선정한 것도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문학시각예술본부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저희들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한번 시켰는데요. 성비가 안 맞거나 지역이 안 맞으면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맞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정기공모부터는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지금 이희경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역, 연령, 성비에 대한 명확한 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예, 보고 자료에 그런 양식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런데 저희가 수많은 심의를 하다보면,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도 비율이 안 맞으면 결재가 안 나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우선 판단할 수 있도록 확인할 게 있는데요. 이게 바뀐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심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효관 사무처장

- 이것은 적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박종관 위원장

- 적용이 안 된 사업이니까 접수를 받고요. 앞으로는 바뀐 형식을 지키는 심의위원 구성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보고 안건은 개방형 계약직(극장장, 미술관장) 채용 추진 계획(안)인데요. 이것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회의자료 73쪽입니다.

앞서 논의해 주신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라서 직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까지 아르코비전 203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극장관과 미술관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기 위한 계획(안)을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의견에 따라서 추진할까 합니다.

채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극장장과 미술관장 각 1명을 채용하는 것이고 채용직급은 3급 본부장급 상당의 전문계약직으로 임용하겠습니다.

근무조건으로 계약기간 2년이고 1년 단위의 연임이 가능하고 최대 계약기간은 5년까지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본부장에 상당하는 기본급 7,000만 원과 성과급 별도 그리고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형 방식으로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기본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용 방식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상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용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두 번째로는 직원채용 방식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채용위원회 운영은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구조고요. 채용위원회에서는 채용절차, 심사기준, 심의위원들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직원채용 방식인데요. 극장장과 미술관장도 직원이기 때문에 현재의 직원들을 채용하는 방식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내부 규정상의 특별채용 방식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채용 전형별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통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서류전형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면접전형은 위원장, 사무처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외부위원은 과반수인 3명 이상 참여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74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위원회 구성방법인데요. 저희가 직원을 채용할 때는 모든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추진됩니다. 그래서 채용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된다면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고요. 채용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안은 위원장과 인사위원장인 사무처장 그리고 예술위원회 위원 3명이 참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사무처장 및 예술위원회 위원 1명과 외부전문가 2명이 참여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채용위원회 운영은 기본적인 채용절차와 심사방법, 기준 등을 확정하고 분야별/전형별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겁니다.

분야라는 것은 극장장, 미술관장에 대해서 각각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그 중에서 서면심사위원과 면접심사위원을 따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4개 분야가 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 구성방법에서 전체적인 기본원칙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이고 채용분야별(극장장, 미술관장)로 별도 구성하며, 각 전형별로 심사위원 5인 내지는 7인으로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74페이지 하단의 직원채용 방식은 인사위원회에 대한 통상적인 채용방식인데요.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계획 등을 수립해서 확정하는 것이고요. 심사위원은 보통 인재성장부에서 심사위원 후보를 구성해 주면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심사위원들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채용하는 일정은, 오늘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이 되고 나면 계획을 수립해서 늦어도 2월까지의 채용할 수 있는 절차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76페이지를 보시면 극장장과 미술관장에 대한 기본적인 직무가 적혀 있고요. 기본적인 것은 아르코극장과 대학로 예술극장에 대해서 운영 총괄하는 예술극장장의 직무가 있고요. 미술관장에 대해서는 아르코미술관과 인사미술공간에 대한 운영 총괄을 하게 됩니다.

77페이지의 해당 자격 요건으로는 관련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요건으로 하고요. 또는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조직대표 이상의 경력자입니다. 2가지 요건 중에서 1개의 요건이 충족되면 응시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

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서 사무처장께서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지금 2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의 요구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직원 채용방식보다는 채용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용절차와 방식을 논의해서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형태로 기본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상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의 인사문제는 인사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 논의를 통해서 “채용위원회로 하자” 라고 결정 하시면 채용위원회에 일임하는 형식 등의 절차를 밟아서 채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용위원회의 전형 방법 등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한 것은 위원회 위원장님과 사무처장님 그리고 관련 위원님과 현장에서 참여하는 형식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채용위원회라는 방식이 가질 수 있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기본 채용방식으로 하자” 이런 의견을 주셔도 좋은데요. 기본적인 방향과 채용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과 본부장의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의견을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방향은 사무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요구로 한 것이고요. 개방형으로 공모하는 것이면 위원회의 사람들로만 하는 것보다는 외부전문가가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극장과 미술관이잖아요? 그러면 내부에 미술 위원도 계시고 연극 등 위원도 계시니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위원장, 사무처장, 예술위 위원 1명보다는 2명으로 하고 외부전문가 2명을 모셔서 하고요. 채용위원회 심사위원은 모두 외부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 저도 이희경 위원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채용위원회가 2개가 꾸려지는 것은 아니죠?

○전효관 사무처장

- 예.

○강홍구 위원

- 차라리 외부전문가가 조금 더 추가되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최창주 위원

- 현장의 요구라고 하니깐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요. 물론 외부전문가들도 맞죠. 그런데 채용위원회를 구성해서 잘못 선정이 된다면 부작용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논리로 얘기를 한다면, 내부의 본부장급들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위촉 선임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박종관 위원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런데 가능하면 그런 것을 피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 모니까요.

○박종관 위원장

- 공론화장에 올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이희경 위원

- 예. 그래야지 문제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걸러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두 분의 말씀을 모두 참고하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위원 구성은 홀수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희경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민간 쪽을 3명으로 구성하고 반드시 성비가 40% 이상 보장을 해 주세요.

○박종관 위원장

- 강홍구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면 그것보다 더 많아져도 좋다는 말씀이시죠.

○강홍구 위원

- 홀수고 너무 많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기봉 위원

- 그리고 이 부분은 지역의 배려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청년 몫으로 1명 정도는 들어와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종영 위원

- 이 부분이 좀 혼란스러워요. 1안에는 위원장, 사무처장, 예술위 위원 3명으로 되어 있고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

○이희경 위원

- 그것은 심사위원이요.

○전효관 사무처장

- 채용위원회는 채용의 방식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심의위원을 위촉하는 것입니다.

○나종영 위원

- 예, 알고 물어본 겁니다. 서류전형도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고민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정성 확보라고 말을 하는데 책임을 지기 싫은 것이죠.

○박종관 위원장

-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종영 위원

- 예를 들어 우리가 직원 채용처럼 수 십 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1명을 뽑아요. 1명을 뽑기 때문에 저는 내부의 시각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부 직원들도 잘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밑의 직원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좀 섞어서 했으면 합니다.

○김기봉 위원

- 저는 그 부분은 명쾌하게 반대합니다. 직원도 공모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강홍구 위원

- 저도 그것은 명확하게 반대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나 위원님의 기본적인 배경은 저희 사무처직원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용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나종영 위원

- 꼭 외부위원들이 다 한다고 해서 100% 좋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세요.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용 감사부장

- 위원님들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싶은 게 있습니다.

자격 요건 중에 일반 요건이 있습니다.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입니다. 저희 본부장급이면 20년쯤 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지원자에 따라서 좋은 분이 전문성도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본부장님들 보다 경력이 낮을 수도 있어서요. 그리고 관련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분이 예술위 본부장으로서는 역량을 갖추고 있을지?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박종관 위원장

- 부장님, 위원도 경력이 10년입니다. 극장장 10년이라고 해서 꼭 10년 경력을 가진 분이 선임되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선출 감사

-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청년이라고 하면 법적 청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급적 젊은 사람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건가요?

○김기봉 위원

- 예, 30~40대에서 1명 정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청년 비율 같은 것은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고를 때 청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김기봉 위원

- 지금은 채용하는 부분이니까요.

○박종관 위원장

- 채용위원회 수준에서요?

○김기봉 위원

- 예.

○이희경 위원

- 지금 예술위 쪽은 모두 남자분이 들어가실 테니 외부전문가는 모두 여자 분이 오셔야 되겠네요.

○전효관 사무처장

- 위촉직 위원 중에 40%입니다.

○강홍구 위원

- 모두 여성으로 하셔도 됩니다.

○김기봉 위원

- 7명 중에 2명 이상이면 됩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위원님들께서 채용위원회에 참여하신다면 몇 분 정도로 합니까?

○김기봉 위원

- 아까 2명을 얘기했잖아요? 시각하고 공연이요.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런데 공연은 연극과 무용으로 나뉘져 있어서요.

○김기봉 위원

- 그것은 위원이 연극에서 들어가면 민간 쪽에서는 무용으로 맞추시면 되지 않겠어요?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러면 종합하면, 예술위원은 2명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는 3명으로 하고요. 그런데 40%와 청년 1인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요. 아까 나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채용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심의위원회를 모두 외부위원으로 하는 것은 안에서 논의를 해 보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이 보고안건도 접수를 받을까 합니다.  
나머지 소위원회 보고가 있는데 꼭 보고를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담당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보고할 내용이 있으시면 보고를 해주세요.

○김기봉 위원

- 성평등소위와 현장소통소위가 만나는 부분은 따로 얘기를 하실 건가요?

○전효관 사무처장

- 그것은 위원회를 종료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소위원회와 관련해서 회의 자료로 올라온 것은 문건으로 보고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회의를 마칠까합니다.  
그러면 차기 회의 일정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 일정 조정)

##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 263차 전체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00분 회의 종료)